의안번호	2220146
의 뢰 인	김도읍 의원
회 답 일	2026.7.29.
추계번호	26E3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7,592억원 등 2027~2028년까지 2년간 총 1조 5,428억원(연평균 7,71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7	2028	누적	연평균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09조제3항)	−3,102	−3,155	−6,258	−3,129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09조제6항)	−4,332	−4,520	−8,852	−4,426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09조제9항)	−158	−161	−318	−159
합 계	−7,592	−7,836	−15,428	−7,714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감면한도: 하이브리드 70만원, 전기 300만원, 수소전기 400만원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연장된 일몰기간을 고려하여 2027~2028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

❑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소분까지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각각 70만원, 300만원, 400만원 한도로 100% 감면하는 제도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실적은 2024년 5,893억원, 2025년(전망) 7,212억원 등으로 나타남

[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2026(전망)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1,085	1,470	2,108	2,408	2,913	3,166
	교육세	325	441	632	723	874	945
전기	개별소비세	700	1,613	1,984	2,057	2,602	2,687
	교육세	210	484	595	617	781	802
수소전기	개별소비세	167	208	137	68	32	33
	교육세	50	62	41	20	10	10
전체		2,537	4,278	5,497	5,893	7,212	7,643

자료: 대한민국정부, 연도별「조세지출예산서」

나. 추계방법

(1) 환경친화적 자동차 1대당 개별소비세 감면금액 추정

❑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세부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세부 실적: 2022~2025년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감면신청 대수	금액	감면신청 대수	금액	감면신청 대수	금액	감면신청 대수	금액
하이브리드	국세청 (국산)	135,082	133,018	191,259	189,187	224,058	219,273	-	-
	관세청 (수입)	14,324	14,031	21,693	21,610	21,506	21,504	23,689	16,545
	계	149,406	147,049	212,952	210,797	245,564	240,777	-	-
전기	국세청 (국산)	45,234	87,146	48,955	102,002	44,373	89,481	-	-
	관세청 (수입)	37,361	74,108	40,425	96,425	45,613	116,194	91,368	156,346
	계	82,595	161,254	89,380	198,427	89,986	205,675	-	-
수소전기	국세청 (국산)	9,307	20,812	6,013	13,723	2,742	6,789	-	-
	관세청 (수입)	0	0	0	0	0	0	0	0
	계	9,307	20,812	6,013	13,723	2,742	6,789	-	-

주: 1. 국세청분(국산차) 2025년의 경우 통계 부존재(통계 미생성)
2. 국세청분은 감면신고 기준
3. 관세청분은 수입신고 기준

자료: 국세청, 관세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위 자료를 바탕으로 감면신청 차량 1대당 평균 개별소비세 감면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1대당 감면금액은 2024년 국산차량 98만원, 수입차량 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의 경우 감면한도 축소의 영향으로 수입차량 1대당 감면액이 70만원으로 감소함

○ 전기자동차의 1대당 감면금액은 2024년 국산차량 202만원, 수입차량 25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의 경우 BYD 등 저가 전기자동차 수입 확대로 수입차량의 1대당 감면금액이 171만원으로 크게 감소함

○ 수소전기자동차의 1대당 감면금액은 2024년 국산차량 248만원으로 나타남

[표 4] 환경친화적 자동차 1대당 평균 개별소비세 감면금액

(단위: 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하이브리드	국산	98	99	98	–
	수입	98	100	100	70
전기	국산	193	208	202	–
	수입	198	239	255	171
수소전기	국산	224	228	248	–
	수입	0	0	0	0

자료: 국세청, 관세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4년(수입의 경우 2025년) 이후 향후 추계기간 동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1대당 평균 개별소비세 감면금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022~2024년 1대당 감면금액 추이 및 2025년 수입자동차의 1대당 감면금액 현황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감면한도액 만큼 감면되는 것으로 전제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는 2025년 종전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됨

[표 5] 추계기간 동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1대당 개별소비세 감면금액 추정: 2027~2029년

(단위: 만원)

구 분		2027	2028
하이브리드	국산	70	70
	수입	70	70
전기	국산	214	218
	수입	178	181
수소전기	국산	262	268
	수입	0	0

자료: 국세청, 관세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6.1.): 2025년 2.0%, 2026년 1.9%, 2027년 2.0%, 2028년 2.0%, 2029년 2.0%

(2)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수 추정

(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 2022~2024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와 감면신청 대수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2025년 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대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2022~2024년 연평균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 대비 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신청 대수 비중(47.5%)을 2025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580,675대)에 적용하여 산출

–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체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에 등재된 것에 한정되며,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시점(제조장 반출)과 신규등록 시점(소비자 구매 이후)에 차이가 있어 신규등록 대수와 감면신청 대수 사이의 오차가 발생

[표 6] 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대수 추정: 2025년

(단위: 대)

	2022	2023	2024	2025(추정치)
감면신청(A)	135,082	191,259	224,058	275,861
신규등록(B)	274,282	390,898	505,281	580,675
A/B	49.2%	48.9%	44.3%	–

주: 1. 2022~2024년은 실적치
2. 신규등록 대수는 전체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국산+수입) 기준
3. 2025년 감면신청 추정치는 2022~2024년 신규등록 대수 대비 감면신청 대수 비중의 평균치를 2025년 신규등록 대수에 적용하여 산출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등록통계월보(2025.12.) 등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6년 이후 추계기간 동안 전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대수는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른 2022~2025년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대수 연평균 증가율(1.7%)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 전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대수 내 국산과 수입의 비중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표 7] 추계기간 동안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 대수 추정: 하이브리드 자동차

(단위: 대)

구 분	2027	2028
국산	285,399	290,292
수입	24,508	24,928
계	309,908	315,2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전기자동차

❑ 2022~2024년 국산 전기자동차 신규등록 대수와 감면신청 대수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2025년 국산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 대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2022~2024년 연평균 국산 전기자동차 신규등록 대수 대비 감면신청 대수 비중(60.3%)을 2025년 국산 전기자동차 신규등록 대수(98,571대)에 적용하여 산출

–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전기자동차는 전체 전기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에 등재된 것에 한정되며,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시점(제조장 반출)과 신규등록 시점(소비자 구매 이후)에 차이가 있어 신규등록 대수와 감면신청 대수 사이의 오차가 발생

[표 8] 국산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대수 추정: 2025년

(단위: 대)

	2022	2023	2024	2025(추정치)
감면신청(A)	45,234	48,955	44,373	59,467
신규등록(B)	85,497	72,660	73,096	98,571
A/B	53.0%	67.4%	60.7%	–

주: 1. 2022~2024년은 실적치
2. 신규등록 대수는 국산 전기 승용자동차 기준
3. 2025년 감면신청 추정치는 2022~2024년 신규등록 대수 대비 감면신청 대수 비중의 평균치를 2025년 신규등록 대수에 적용하여 산출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515천대」, 2026.1.29.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6년 이후 추계기간 동안 국산 전기자동차 및 수입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대수는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른

2022~2025년 국산 승용자동차 신규등록대수 연평균 증가율(1.4%) 및 같은 기간 수입 승용자동차 신규등록대수 연평균 증가율(3.0%)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표 9] 추계기간 동안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 대수 추정: 전기자동차

(단위: 대)

구 분	2027	2028
국산	61,110	61,948
수입	96,915	99,813
계	158,025	161,76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수소전기 자동차

❑ 국내에 판매 중인 수소전기자동차(승용)가 현대자동차의 넥쏘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의 넥쏘 자동차 내수 판매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의 수소전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 대수를 추정한 결과 5,659대로 나타남

○ 2025년 넥쏘 판매실적(5,678대)에 2024년 넥쏘 내수판매량(2,751대) 대비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대수(2,742대)의 비중(99.7%)을 적용하여 추정

❑ 향후 추계기간 동안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대수는 2024~2025년 평균 신청대수가 유지된다고 가정

○ 신차 출시 여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수소전기 자동차의 판매실적이 유동적이고,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수소전기자동차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향후 감면신청 대수 추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2024~2025년의 평균치를 활용함

[표 10] 추계기간 동안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 대수 추정: 수소전기 자동차

(단위: 대)

구 분	2027	2028
수소전기 자동차	4,201	4,2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앞서 추정한 추계기간 동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신청 대수 및 1대당 감면액을 곱해 개별소비세 감면액을 추계하고,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1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하이브리드

(단위: 대, 억원)

구 분		2027			2028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
내수	1대당 감면액 (a, 만원)	70	214	262	70	218	268
	감면대수(b)	285,399	61,110	4,201	290,292	61,948	4,201
	내수 감면액 (A=a×b)	1,998	1,306	110	2,032	1,350	112
수입	1대당 감면액 (c, 만원)	70	178	0	70	181	0
	감면대수(d)	24,508	96,915	0	24,928	99,813	0
	수입 감면액 (B=c×d)	172	1,723	0	174	1,810	0
개별소비세 감면액 (C=A+B)		2,169	3,029	110	2,207	3,161	112
교육세 감면액 (D=C×30%)		651	909	33	662	948	34
부가가치세 감면액 (E=(C+D)×10%)		282	394	14	287	411	15
합 계 (C+D+E)		3,102	4,332	158	3,155	4,520	161

❑ 위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개정안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7,592억원 등 2027~2028년까지 2년간 총 1조 5,428억원(연평균 7,71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액)의 10%가 부과됨

[표 1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연료별

(단위: 억원)

	2027	2028	누적	연평균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09조제3항)	−3,102	−3,155	−6,258	−3,129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09조제6항)	−4,332	−4,520	−8,852	−4,426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09조제9항)	−158	−161	−318	−159
합 계	−7,592	−7,836	−15,428	−7,714

[표 1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목별

(단위: 억원)

	2027	2028	누적	연평균
개별소비세	−5,309	−5,480	−10.788	−5,394
교육세	−1,593	−1,644	−3,237	−1,618
부가가치세	−690	−712	−1,403	−701
합 계	−7,592	−7,836	−15,428	−7,714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